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개정령

- 보건복지부령 제139호(’99.12.29) -

보건복지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등 식품등의 영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청소년을 유혹접객원으로 고용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의 불법·퇴폐·변태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1999년 12월 29일자로 개정하였다.

### 1. 주요골자

- 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중 규격검토서와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제외시킴으로써 식품등의 수입신고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1조제1항).
- 나. 지금까지 소분판매가 금지되던 빙초산·구연산·감미료 등의 식품첨가물과 식품중 다류를 앞으로는 소분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 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동일 읍·면·동안에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 라. 영업신고의 처리기간을 현행 3일 내지 8일이던 것을 앞으로는 지체없이 하도록 하되, 신고수리후 1월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27조제5항 및 제7항).
- 마.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9 제8호가목(1)].
- 바.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퇴폐·변태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9 제8호나목(1)].
- 사.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을 유혹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5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

##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판매등이 금지되는 병육) 법 제5조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다음의 질병을 말한다.	제3조(판매등이 금지되는 병육)-----
1. 동물의 봄의 전부를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는 질병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과 리스테리아병·살모넬라병·파스튜렐라병·전신근염·전신근육수종·폐혈증·황달(고도로 진행되어 육질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농독증·구간낭증·선모충증·요독증 및 인체에 유해한 약물·사료 중독증	- 다음 각호----- 1.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2. 리스테리아병·살모넬라병·파스튜렐라병·구간낭증·선모충증
2. 동물의 봄의 병들 부분만을 식용에 사용하지 못하는 질병 : 염증(각종 장기의 농양·근염·충혈 및 울혈을 포함한다)·외상(육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종양·심한 기형증·방선균증·황달(육질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한다)·기생충증·폐기증·수증(폐·근육·심장·횡경막·위장의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품검사신청 및 검사수수료) ①법 제13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인삼제품류·건강보조식품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품목에 대한 제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행한다. ②(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별표 4에 의한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이하 "검체"라 한다)의 채취단위마다 1천2백원의 제품검사수수료를, 인삼제품류의 경우에는 별표 5의2의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건강보조식품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품목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판매예정가	제7조(제품검사신청 및 검사수수료)----- -----<후단 삭제> ②(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제품의 판매예정가 또는 수출가격의 1천분의 5의 범위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제품검사수수료를 당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판매단위가 10그램미만의 제품, 인삼제 품류 및 건강보조식품인 경우 : 소형	〈삭 제〉
2. 판매단위가 10그램이상 50그램미만의 제품인 경우 : 중형	〈삭 제〉
3. 판매단위가 50그램이상의 제품인 경우 : 대형	〈삭 제〉
4. 수출용제품인 경우 : 수출용 ② 제1항 각호의 제품검사합격증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품검사합격증지로 제품을 봉인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합격증지의 내용을 인쇄하게 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합격인을 찍도록 함으로써 제품검사합격증지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용 제품검사합격증지가 인쇄되어 있는 용기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 ③
④ (생 략) 제11조(식품등의 수입신고)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서울·부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립검역소장(서울·부산·인천·김해검역소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도착예정일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수출용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1. (생 략) 2. 수입승인서 사본(대외무역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는 식품인 경우에 한한다) 3. ~ 6. (생 략) ② (생 략)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표시보완 작업장의 소재지를 관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 행	개 정 안
<p>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표시보완확인등의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요청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생 략)</p> <p>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등수입신고수리대 장에 기재하고, 매월 수입신고상황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신 고수리대장과 수입신고상황보고서를 전산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p> <p>⑥ 축산물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중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와 제2항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축산물검역신청서와 축산물검역증명서로 갈음한다.</p> <p>⑦ ~ ⑨ (생 략)</p> <p>제11조의3(녹색신고) ①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그 식품의 재배·보관·운송 등의 과정에서 사용한 농약등의 종류와 그 사용시기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서울·부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한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립검역소장(서울·부산·인천·김해검역소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p> <p>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 소장은 제1항의 신고를 성실히 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등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p> <p>③ 성실신고자의 우대조치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13조(수거량·검사의뢰등) ①~③ (생 략)</p> <p>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p>	<p>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p> <p>매년 식품등의 수입신고상황을 당해 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p> <p>〈삭 제〉</p> <p>⑦ ~ ⑨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13조(수거량·검사의뢰등)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p> <p>구청장</p>

현 행	개 정 안
<p>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p> <p>⑤ · ⑥ (생 략)</p> <p>제16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p> <p>① (생 략)</p> <p>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지정한다.</p> <p>제17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p> <p>1. ~ 6.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16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p> <p>----- 기관 -----</p> <p>제17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의 2서식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검사실 평면도</p> <p>2.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p> <p>3.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p> <p>4.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p> <p>② 제1항제4호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의 3서식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7조의2(식품위생검사기관 변경신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 4서식에 의한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대표자</p> <p>2. 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p> <p>3. 검사대상 식품등</p> <p>4. 검사수수료</p> <p>제17조의3(지정의 취소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업</p>



현 행	개 정 안
<p>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신고를 할 수 있다.</p> <p>③ 삭제&lt;95·8·31&gt;</p> <p>제22조(영업허가의 신청)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시설배치도</p> <p>2.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공이 필요할 경우에 한한다)</p> <p>3. 삭제&lt;96·12·20&gt;</p> <p>4.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서(영 제7조제8호의 식품점객영업자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p>	<p>②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영업허가의 신청) ①</p>
<p>5. (생략)</p> <p>6. 검사의뢰계약서(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p> <p>7. (생략)</p> <p>8.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p> <p>9. 영업소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방화시설등의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서</p>	<p>2.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4.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통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p> <p>5. (현행과 같음)</p> <p>6. &lt;삭제&gt;</p> <p>7. (현행과 같음)</p> <p>8. &lt;삭제&gt;</p> <p>(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p> <p>9.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통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이상인 경우와 동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u></p> <p>②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24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는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철도의 정기장시설에서 영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갈음하여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③ 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영 제7조제8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영업허가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 영 제7조제8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한 영업허가관리대장을 각각 작성·보관하거나 동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23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영업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주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li> <li>식품보존업의 경우 : 냉동·냉장실을 축소하고자 할 때</li> </ol>	<p>②-----</p> <p>----- . &lt;단서 삭제&gt;</p> <p>③-----</p> <p>영 제7조제3호 및 제6호가목-----</p> <p>영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p> <p>영 제7조제3호 및 제6호가목-----</p> <p>영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3조(허가사항의 변경) &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3. 삭제&lt;98·10·19&gt;</p> <p>②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가증</li> <li>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li> </ol> <p>③허가관청은 허가받은 자가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서류외에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 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7조제8호가목의</p>	<p>②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li> <li>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li> <li>3.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li> <li>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li> <li>5.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li> </ol> <p>&lt;삭제&gt;</p>

현 행	개 정 안
<p>휴게음식점영업 또는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 대장등본에 갈음하여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④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p> <p>1. · 2. (생 략)</p> <p>3. 식품점책영업소의 조리장·객석 또는 객실의 시설</p>	<p>④-----</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영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p>
<p>제25조(품목제조의 보고등) ①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품생산의 개시전이나 제품생산의 개시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 2. (생 략)</p> <p>3.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사유서</p> <p>② (생 략)</p>	<p>제25조(품목제조의 보고등) ①-----</p> <p>-----</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6조(품목제조보고사항등의 변경) ① (생 략)</p> <p>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당해 품목의 유통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통기간변경보고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6조(품목제조보고사항등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p> <p>연장</p> <p>-----</p> <p>유통기간</p> <p>연장보고서에 연장사유서</p>
<p>제27조(영업의 신고등) ① 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시설배치도</p> <p>2. (생 략)</p> <p>3.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p>	<p>제27조(영업의 신고등) ①-----</p> <p>-----</p> <p>-----</p> <p>-----</p> <p>-----</p> <p>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5호서식</p> <p>-----</p> <p>〈삭제〉</p> <p>2. (현행과 같음)</p> <p>3. -----</p>

현 행	개 정 안
제조방법설명서(영 제13조제4호의 영업에 한한다) 4. (생 략) 〈신 설〉	----- (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한다) 4. (현행과 같음)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 설〉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 설〉	8.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위반증명서(영 제7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신 설〉	9.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면·동에서 식품





현 행	개 정 안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사항 및 수리된 영업신고사항중 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허가 또는 신고수리사항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지시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고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시정지시를 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산물 해양수산부장관 ③
제33조(영업자지위승계신고) ①·②(생 략)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 설〉	제33조(영업자지위승계신고) ①·②(현행과 같음)
제36조(위생교육대상자)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자가 제23조제4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영양사와 조리사를 제외한 종업원	제36조(위생교육대상자) 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중 허가관청에서 교육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1. · 2. (현행과 같음) 3.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 식품으로 인하여 유행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육을 받도록 고시한 영업자 및 종업원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

현 행	개 정 안
대하여는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위생교육기관등)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실시기관과 실시기관별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7조(위생교육기관등)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실시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생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동조제2호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 및 식품위생관리인 : 한국식품공업협회	
2. 영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동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자(건강보조식품판매업의 경우 방문판매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자, 동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자, 동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및 식품접객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동업자조합이나 단체	
3.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 :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주 또는 해당업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영양사 또는 식품위생관리인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37조의2(교육시간)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는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12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벽지 등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를 받은 후 또는 선임신고후 3월이내에 허가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2(교육시간) ①----- -----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또는 선임신고후 3월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자중 신규 영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7호(제5호 나목 (5)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다)	1.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의 영업자 : 영업허가 또는

현 행	개 정 안
<p>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 매년 4시간</p> <p>2. 영 제7조제5호나목의 (1) 식육판매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 : 영업신고후 2월이내에 6시간</p> <p>3. 영 제7조제5호나목(5)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 : 3년마다 4시간(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후 6월이내에 4시간)</p> <p>4. 영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 3년마다 4시간</p> <p>5. 식품위생관리인 : 매년 4시간</p> <p>6.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업원 : 매월 1시간</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점객업의 신규위생교육을 받은자가 교육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교육을 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내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단서 신설〉</p>	<p>영업신고후 3월이내 12시간. 다만, 식품위생관리인 또는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이수한자가 당해 영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2. 영 제7조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의 영업자 : 영업신고후 6월이내에 4시간</p>
	<p>③ 제1항 및 제2항</p> <p>-----</p> <p>-----</p> <p>-----</p> <p>-----</p> <p>-----</p>
	<p>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동조제4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 2. (생 략)</p> <p>〈신 설〉</p> <p>④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의 개설등록을 얻어 영 제7조제5호나목(7)의 건강보조식품판매업을 하는자가 동법 제1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37조의3(교육교재등) ① (생 략)</p> <p>② 위생교육기관등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의 결과를 교육후 1월이내에 허가관청에, 다음 해 1월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교부대장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동조제2호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과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p> <p>〈삭 제〉</p> <p>제37조의3(교육교재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 -----</p> <p>-----</p> <p>-----</p> <p>-----</p>



### 3. 별표 개정사항

별표 1 제5호를 삭제하고, 동표 제7호중 “냉면육수·칼·도마·행주 등을”을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중 “제7조 및 제8조”를 “제8조”로 하고, 동표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를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자목을 카목으로 하고, 동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외화획득용 식품등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하는 기구의 원재료

차.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용 식품

별표 6 제2호가목(3)을 삭제하고, 동목에 (9) 내지 (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나목(3)중 “5배이하인”을 “10배이하인”으로 한다.

(9) 외화획득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식품등

(10)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1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자가 자자제품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별표 6 제2호다목에 (7)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된 사실이 있는 식품등

(8) 제1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수입신고인이 수입하는 식품등

별표 6 제2호라목 본문중 “다음의 식품등”을 “식용향료를 제외한 다음의 식품등”으로 하고, 동목(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목(3)중 “식품등”을 “식품등으로서 개별품목당 수입신고한 수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식품등”으로 한다.

다만,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식품원료

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

별표 6 제3호가목에 (5) 및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의 수입신고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수입 최소량에 미달되는 식품등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신고한 식품등이 (5)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한 동일사동일식품등이라 하더라도 그 수입신고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수입 최소량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로 수입 최소량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이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입자로 하여금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별표 6 제4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기기 또는 통신망의 장애로 전산기기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1호나목(1)중 “다른 용도”를 “식품제조·가공외의 용도”로 하고, 동목(4)를 삭제하며, 동호사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9 제1호사목(1)(나)중 “식육제품중 단순절단포장육만을 가공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을 “와 단순가공품”으로 하고, 동호아목과 동호자목(1)(가)②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제1호자목(2)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을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소”로 하고, 동목(4) 중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

인등이”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인 또는 어업인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 단체가”로 하며, 동목(5)중 “허가받은”을 “허가받거나 신고한”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1)중 “다른 용도”를 “즉석판매제조·가공외의 용도”로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바목의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9 제4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9 제5호가목(1)(가) 본문중 “다른 용도”를 “식품소분·판매업외의 용도”로 하고, 단서중 “식육판매업소”를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소”로 하고, 동목(1)(나)중 “소분실과 식육판매업의 발굴작업실”을 “소분실”로 하며, 동목(2)중 “우유류판매업·식품등수입판매업”을 “식품등수입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9 제5호나목(2) 내지 (4)를 각각 삭제하고, 동목(7)(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9 제5호나목(8)을 삭제하고, 동목(9)(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9 제6호나목(5)중 “작업장에는 75루스이상의 조명시설이 있어야 하고.”를 “작업장에는”으로 한다.

별표 9 제8호가목(1)(가) 본문중 “다른 용도”를 “식품접객업외의 용도”로 하고, 단서 중 “식육판매업”을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의 식육판매업”으로 하며, 동목(1)(나)를 삭제하고, 동목(1)에

(라) 및 (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9 제8호가목(2)(가) 단서중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의 조리장”을 “영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중 과자점 형태의 영업소로서 동일건물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 및 동조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으로 하고, 동목(2)(라)중 “2종이상의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며, 동목(2)(사)를 삭제하고, 동목(6)(가)중 “공원등”을 “공원·유원시설 등”으로 한다.

별표 9 제8호나목(1)에 (마)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2)(가)를 삭제한다.

(마)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9 제8호나목(2)(라)·(마) 및 동목(3)(가)·(다)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5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표 제10호중 “물을 식품의 원료(배합수)로”를 “지하수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로 한다.

이 경우 장난감등은 품질경영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별표 12 제12호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동표 제13호중 “이행한 후”를 “이행한 경우”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중 “영업허가증을 업소안에”를 “영업신고증을 업소안에 보관하거나”로 하고, 동호사목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하며, 동호아목중 “이행한 후”를 “이행한 경우”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다목·마목·차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러목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하며, 동호머목중 “이행한 후”를 “이행한 경우”로 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호나목 중 “자판기”를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로 하며, 동호사목중 “영업신고번호”를 “영업신고번호, 자판기별 일련관리번호(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을 일괄신고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13 제5호라목 내지 바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아목중 “붙여야”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로 하며, 동호자목중 “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과 허가관청”을 “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을 영업소안에 보관하거나 게시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으로 한다.

별표 13 제5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홍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홍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2)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3)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큐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4)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5)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6) 청소년(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홍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홍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7)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8)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18세의 청소년이 부모·직장상사 등 성년인 보호자와 동반하여 단란주점을 출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별표 13 제5호하목 및 거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버목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하며, 동호서목중 “이행한 후”를 “이행한 경우”로 한다.

별표 13 제5호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안에 설치된 무대시설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14 제1호더목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표 15 I. 일반기준 제2호중 “영업시간 준수사항위반, 미성년자의 유홍접객원고용 등 그 위반내용이 명백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를 “위반행위에 대하여”로 한다.

별표 15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의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5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5호파목의 위반사항란중 “규격 또는 품목제조보고한 성분배합비율”을 “규격의 성분배합비율”로 한다.

별표 15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8호가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정장소에 일괄표시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항목을 누락한 경우로서				
	(1) 3개사항이상을 위반한 것	품목제조정지 1월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3월 품목제조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품목제조정지 2월
나. 일정장소에 일괄표시할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로서	(2) 3개사항미만을 위반한 것			
	(1) 3개사항이상을 허위로 표시한 것	품목제조정지 1월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3월 품목제조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품목제조정지 3월
다. 제품명의 표시가 기준을 위반한 것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월
	(2) 3개사항미만을 허위로 표시한 것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10일	품목제조정지 1월
라. 화학적 합성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표시기준을 위반한 것				

별표 15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8호자목·차목·타목 및 파목(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때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2월	품목제조정지 3월
	차.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당해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 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때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2월	품목제조정지 3월
	타. 포장한 2개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한 것으로, 그 내용물이 재포장 용량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때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2월	품목제조정지 3월
(1) 3개사항이상인 때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1월	품목제조정지 2월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9호마목 1차위반란중 “품목제조정지 7일”을 “시정명령”으로 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다목을 삭제한다.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때 (시설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때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2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사목 위반사항란중 “변경보고”를 “연장보고”로 하며, 동호아목 위반사항란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때(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동목 1차위반란중 “영업정지 15일”을 “시설개수명령”으로 한다.

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때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마.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16호를 삭제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17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중				
(1) 별표 12 제1호 위반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미작성·미보관 (나)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미보관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0일
(2) 별표 12 제3호 또는 제11호 위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3) 별표 12 제8호 위반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4) 별표 12 제10호 위반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 (나) 부적합판정한 물을 계속사용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5) 위 (1) 내지 (4)를 제외한 준수사항 위반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중			
(1) 별표 13 제1호가목 위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2) 별표 13 제1호바목 위반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 (나) 부적합판정한 물을 계속사용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3) 별표 13 제1호나목·라목 또는 마목 위반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4) 위 (1) 내지 (3)외의 준수사항 위반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별표 15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23호 위반사항란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별표 15 II.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의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5 II.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 제8호다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바목을 삭제한다.

(1) 30퍼센트이상 부족한 것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2) 30퍼센트미만 부족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별표 15 II.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 제10호가목 위반사항란중 “허가 또는 신고없이”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하고,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때 (시설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때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	--	----------------------------------	-------------	------------

별표 15 II.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 제10호라목을 삭제하고, 동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바목 위반사항란중 “허가를 받은”을 “신고한”으로 한다.

마.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	--	--------	------------	------------

별표 15 II.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 제13호가목(1) 내지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나목(1) 위반사항란중 “나목”을 “별표 13 제3호나목”으로 한다.

(1) 별표 13 제2호바목 위반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 (나) 부적합판정한 물을 계속사용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2) 별표 13 제2호타목 · 거목 또는 나목 위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3) 별표 13 제2호자목 · 카목 또는 파목 위반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별표 15 II.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 제15호를 삭제한다.

별표 15 II.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 제19호 위반사항란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별표 15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5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2호다목 및 라목 위반사항란중 “제5조”를 각각 “제5호”로 한다.

별표 15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6호 1차위반란 “영업정지 7일”을 “시정명령”으로 한다.

별표 15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9호가목 위반사항란중 “받지 아니하고”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하고,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로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때 (시설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때				

별표 15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1)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에 무도장을 설치한 때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2)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때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별표 15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9호바목 위반사항란중 “영업허가를 한 경우”를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로 하고, 동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자목을 삭제한다.

아.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	--	--------	------------	------------

별표 15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법 제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별표 13 제5호자목 · 어목 및 별도의 개별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55조 및 법 제58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가. 별표 13 제5호타목(6) 위반				

나. 별표 13 제5호타목(1) 또는 타목(7) 위반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다. 별표 13 제5호다목·타목(5)·타목(9) 또는 저목 위반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라. 별표 13 제5호타목(2)·타목(8) 또는 더목 위반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마. 별표 13 제5호나목·카목·타목(3)·(4) 또는 너목 위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바. 별표 13 제5호려목 위반 (1) 수질검사를 검사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 (2) 부적합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사. 가목 내지 바목을 제외한 준수사항 위반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8호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 기타 제2호 내지 제17호를 제외한 법 위반(별표 13 제5호자목·어목을 제외한다)

별표 15 Ⅲ. 과징금제외대상 제1호나목중 “타목·파목의 (1)”을 “타목”으로 하고, 동호다목·사목·자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호라목중 “가목 또는 나목”을 “가목”으로 하고, 동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과징금을 체납중인 때

별표 15 Ⅲ. 과징금제외대상 제2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과징금을 체납중인 때

별표 15 Ⅲ. 과징금제외대상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마목을 삭제하며, 동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동호에 바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9호 바목에 해당하는 때(다만, 동호바목중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영업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바. 제14호나목중 별표13 제5호타목(1)·(7), 동호다목중 별표13 제5호타목(9) 및 저목, 동호라목중 별표13 제5호타목(2)·(8)에 해당하는 때

아. 과징금을 체납중인 때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②제품분류란중 “□ 건강보조식품 □ 인삼제품류 □ 식품첨가물”을 “□ 건강보조식품”으로 하고, 동서식의 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1) 제품검사는 수입되는 전강보조식 품도 포함됩니다.

2) 수수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수수료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의4서식,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제1호중 “⑥원재료 또는 성분배합비율(%)”을 “⑥원재료 또는 성분명”으로 하고, 동서식 제2호중 “주원료(%)”를 각각 “주원료”로, “변경주원료배합비율”을 각각 “변경주원료명”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중 “⑦영업허가번호”를 “⑦영업허가(신고)번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광역시시장을”  
시장·군수·구청장

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내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내지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중 “동법시행규칙 제47조”를 “제47조”로 하고, 수수료란중 “5,000원”을 “5,500원”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수료란중 “없음”을 “890원”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3호 및 별표 16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규칙 시

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냉동·냉장업과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2000년 3월 31일까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업신고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류, 어육제품(어묵살·어육반제품 및 연육을 제외한다), 두부류, 다류(커피중 인스탄트커피를 제외한다), 갈비가공품, 건조저장육 기타 식육가공품 및 즉석간조식품의 제조·가공 등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그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3월 31일까지 그 신청을 받아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업신고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면·동에서 2대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일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2000년 3월 31일까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5)

**제품검사합격증지교부수수료(제10조관련)**

구 분	합 격 증 지	수수료(1매당)
건강보조식품	국 내 용	3원

주 : 합격인을 찍는 경우의 수수료도 위 표의 수수료에 의한다.

### 자가품질검사기준(제19조관련)

#### 1. 식품등의 검사

- 가.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성분·규격을 적용 받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때에는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다.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라. 검사항목의 적용은 당해 제품의 해당항목에 한한다.
- 마.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1) 별표 9 제1호사목(1)(나)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식품중 빵류(크림빵 및 샌드위치에 한한다)·아이스크림제품류·식육제품·어육제품·두부류·식용유지·청량음료·추출가공식품·순대류 및 도시락류
-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6월마다 1회이상
- (2) 식품제조·가공업중 인삼제품류 및 건강보조식품
- (가) 식품일반의 성분에 관한 규격중 잔류농약 : 1월마다 1회이상[인삼제품류중 농축인삼류·농축홍삼류·인삼분말류(인삼 100%에 한한다) 및 홍삼분말류(홍삼 100%에 한한다)]
- (나)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1월마다 1회이상
- (3) (1)(2)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1월마다 1회이상
- (4)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또는 용기·포장류제조업자
- (가)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 : 1월마다 1회이상
-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별 규격 : 동일재질별로 2월마다 1회이상
2. 기타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1〕

즉석판매제조 · 가공대상식품(제24조의2관련)

식 품 군	식 품 의 유 형
1. 과자류	(1) 빵류 (2) 전과류 (3) 떡류 (4) 한과류
2. 당류	엿류
3. 아이스크림제품류	(1) 아이스크림류 (2) 빙과류
4. 식육제품	(1) 소시지류 (2) 베이컨류 (3) 햄류 (4) 양념육(육지물) (5) 알가공품 (6) 족발 (7) 분쇄가공품 (8) 갈비가공품 (9) 건조저장육 (10) 기타식육가공품
5. 어육제품	전품목(어묵살 · 어육반제품 및 연육을 제외한다)
6. 두부류	전품목
7. 식용유지	압착식으로 착유하는 전품목
8. 면 류	(1) 건면류 (2) 숙면류 (3) 생면류
9. 다 류	전품목(커피중 인스탄트커피를 제외한다)
10. 김치 · 절임식품류	전품목
11. 청량음료	과채류음료(100% 과실 및 채소류즙에 한한다)
12. 조미식품	(1) 고추가루 및 실고추 (2) 천연향신료
13. 기타식품류	(1) 과일 · 채소가공품류 (2) 조미김 (3) 건포류 (4) 단순가공품 (5) 추출가공식품 (6) 순대류 (7) 튀김식품 (8) 팝콘용옥수수가공식품 (9) 도시락류 (10) 즉석건조식품

[별표 16]

## 수 수 료(제59조관련)

### 1. 영업허가 및 신고 등

- 신 규 : 28,000원
- 변 경 : 26,500원
- 조건부영업허가 : 28,000원
- 집단급식소설치신고 : 33,800원
- 허가증(신고증) 재교부 : 5,300원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9,300원

\*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규영업허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 2. 조리사면허

- 신 규 : 5,500원
- 면허증 재교부 : 3,000원
- 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 : 890원

### 3. 식품등의 수입신고

#### 가. 수입물품별 수수료

수 입 신 고 물 품	수 수 료
식 품	20,000원
식 품 첨 가 물	20,000원
기구·용기·포장	20,000원

나. 검사수수료 :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시험수수료액표에 의한다.

#### 다. 수수료의 면제

##### (1) 신고수수료 면제

다음에 해당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

(나)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등

(다) 세관장이 공매절차 진행과정중 검사의뢰하는 수입식품등

##### (2) 검사수수료 면제

(가) 별표 6 제2호다목(2) 및 (6)에 해당하는 식품등

(나) 별표 6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식품등

〈별지서식 생략〉